

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

1 추진 배경

-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용·보완하여 결혼식 행사 세부기준 마련

2 세부 내용

① 50명 이상 집합금지 기본 원칙(책임자·종사자·방문객)

- 결혼식은 집합·모임·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,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수로 진행해야 함
 - * 예시) 주최 측(신랑신부) 포함,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 50인 미만(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)
-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(총인원 기준)이 머물러야 하며,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함
 - * 50명 이상의 하객이 왔을시 예식장 실외 대기 및 완전히 분리된 공간 이동 조치
 - 예) 예식홀과 로비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므로 허용하지 않음
 - * 결혼식 예식 시간이 겹쳐 하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한 공간에 50명 이상이 머무를 수 없도록 사전 안내 및 통제

② 마스크 착용 및 사진 촬영 기본 원칙(책임자·종사자·방문객)

-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 외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
 - 신부 대기실에서도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대기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
 -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, 전원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*
 - * 신랑·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

- 신랑·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·퇴장, 메이크업 후 및 결혼식장 내 마스크 착용을 예외로 할 수 있음
- 신랑·신부에 한하여 입·퇴장 및 결혼예식 진행 중 1m 이상 거리 두기를 예외로 할 수 있음

③ 답례품 및 식사 제공 기본 원칙(책임자·종사자·방문객)

-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

④ 방역수칙 준수 사전 안내 및 방송 실시(책임자·종사자)

- 고객에게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변경사항 사전 안내
- 예식홀 및 식당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 실시

⑤ 결혼식장 위약금 관련 세부 사항(책임자·종사자)

- 예식업중앙회 회원 예식업체의 경우 자체분쟁 조정 내용 수용 협조

▣ 예식업중앙회 자체분쟁 조정 내용 (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 참조)

-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(내년 2월)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허용
- 예정대로 결혼식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기존보다 감축 조정
- ※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(8.21.) : 공정위 홈페이지 - 공정위 소식(7998번) 참조

- 개별 예식업체 대상 분쟁조정 자율시행 권고
 - 예식업중앙회 외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협조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(8.21., 공정거래위원회)